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8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 : 김 윤 · 민병덕 · 임미애

정준호 • 박희승 • 김남희

조 국 · 서미화 · 정진욱

강선우・강준현・이재강

백승아 • 이수진 • 이기헌

김선민 · 남인순 · 한창민

홍기원 · 김영배 · 윤종오

박정현 • 전종덕 • 전진숙

정혜경 · 김남근 · 서영석

조계원 · 모경종 의원

(29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여 국민의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 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 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 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심의하기"를 "심의 · 의결하기"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
- 6. 의료기관별 중증도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 7.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건의 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하 여 자문하여야 한다.

제5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필수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u>심의하기</u>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u>심의·의결하기</u>
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 한다.	심의·의
	<u>결</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
	<u>책</u>
<u><신 설></u>	6. 의료기관별 중증도 분류에
	<u>대한 가이드라인</u>
<u> <신 설></u>	7.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
	별법」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u>5.</u> (생 략)	<u>8.</u> (현행 제5호와 같음)
<u> <신 설></u>	② 위원회는 제1항제5호 및 제
	6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
	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
	런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제30조의2(필수의료체계)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국내에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의 하나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